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산림협력단을 폐지하면서 남북산림협력단에서 수행하던 남북산림협력 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3년 7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림청에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남북산림협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남북산림협력팀을 신설하면서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림일자리창업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10일에서 2025년 8월 10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8명(5급 3명, 7급 5명) 중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감축된 인원을 제외한 인력 7명(5급 2명, 7급 5명) 중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에서 2025년 7월 31일까지, 6명(5급 1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에서 2024년 7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 및 행정·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산림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복수 직렬로 조정하며, 산림청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0. ~ 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원제도 운영 및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국제협력담당관·해외자원담당관 및 임업통상팀”을 “국제협력담당관·해외자원담당관·임업통상팀 및 남북산림협력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남북산림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1. 남북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합의 사항의 이행 지원
3. 북한의 산림 조성·보호 등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국민참여 계획의 수립·시행
5.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국내외 홍보전략 수립·시행
6. 북한 산림 관련 정보 분석·연구

제21조제1항 단서 중 “13명”을 “12명”으로,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남북산림협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7월 2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림청에 둔다.

별표 3 중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을 “4”로 하고, 전산사무관 “5”를 “4”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24”를 “3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19”를 “318”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70”을 “69”로 하고,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을 “4”로 하며, 전산사무관 “5”를 “4”로 한다. 별표 7 중 공업서기 “5”를 “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36”을 “137”로 하며, 기계운영서기 “4”를 “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7의2 중 공업서기 “5”를 “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36”을 “137”로 하며, 기계운영서기 “4”를 “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10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2년 8월 10일”을 “2025년 8월 10일”로 한

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2년 7월 31일”을 “2024년 7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남북산림협력팀은 2023년 7월 2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감원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산림청의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산림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7조 관련)

1. 제27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4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임업연구사	1

2. 제27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7월 2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④ (생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u>1의2. 청원제도 운영 및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u>
2. ~ 14. (생략)	2. ~ 14.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국제산림협력관) ① (생략)	제5조(국제산림협력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u>국제협력담당관·해외자원담당관 및 임업통상팀</u> 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u>국제협력담당관·해외자원담당관·임업통상팀 및 남북산림협력팀</u> ----- ----- ----- ----- -----.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③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	<u><삭제></u>

에 관한 사항(「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남북산림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1. 남북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합의 사항의 이행 지원
	3. 북한의 산림 조성·보호 등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국민참여 계획의 수립·시행
	5.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국내외 홍보전략 수립·시행
	6. 북한 산림 관련 정보 분석·연구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2와 같으며, 별표 3의 2의 정원 중 13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5명,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 ----- -- 12명 ----- ---- 2명,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남북산림협력단) ① 남북산림협력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삭제>
② 남북산림협력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③ 별표 10에 따라 남북산림협력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제27조(한시정원) (생략)	제27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남북산림협력에 관한 업무를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립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3</u>	<u>4</u>	+1
·	·	·	
·	·	·	
전산사무관	<u>5</u>	<u>4</u>	-1
·	·	·	
·	·	·	

[별표 3의2]

산립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4</u>	<u>323</u>	-1
·	·	·	
·	·	·	
일반직 계	<u>319</u>	<u>318</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70</u>	<u>69</u>	-1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3</u>	<u>4</u>	+1
·	·	·	
·	·	·	
전산사무관	<u>5</u>	<u>4</u>	-1
·	·	·	
·	·	·	

[별표 7]

지방산립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	<u>5</u>	<u>6</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136</u>	<u>137</u>	+1
•	•	•	
•	•	•	
기계운영서기	<u>4</u>	<u>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6</u>	<u>5</u>	-1

[별표 7의2]

지방산립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	<u>5</u>	<u>6</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136</u>	<u>137</u>	+1
•	•	•	
•	•	•	
기계운영서기	<u>4</u>	<u>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6</u>	<u>5</u>	-1